

인천지방법원 2021. 10. 20 선고 2020나7024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1. 10. 20 선고 2020나70246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0. 8. 20 선고 2019가단2946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8. 25.

판결선고 2021. 10. 20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가단2946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0,593,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양민호, 판사 김범진, 판사 김 현